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90 발의연월일: 2023. 4. 3.

발 의 자:김영배·송갑석·홍익표

유정주 · 정성호 · 이해식

박광온 · 김승원 · 강병원

이상헌 • 윤후덕 • 최기상

김종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범죄는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 보호자에게 되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며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그러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상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함.

이에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도망·신체손상"을 "병역면탈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 게시·유통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u>도망·신체손상</u>	등)	(생	제86조(<u>병역면탈행위</u> 등) <u>①</u>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
			조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
			<u>하의 징역에 처한다.</u>
<u> <신 설></u>			③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
			<u>장 정보 등 게시·유통한 사람</u>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